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유자 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58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26.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인 요양원 등의 노유자(老幼者)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초기에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재나 그 밖의 재난 상황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노유자(老幼者)시설의 관계인¹⁾에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생략) <u><신설></u>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²⁾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u>
② (생략)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제3항----- -----.
제5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생략)	제5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조의2제3항----- ----- ----- -----.
	④ (현행과 같음)

1)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의미하는데,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등을 뜻함(「소방시설법」 제2조)

2) 「건축법」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³⁾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21조의2, 제56조제3항).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⁴⁾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 소방의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됨.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의 경우 이용자 대부분이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피난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의무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크기는 가로 6미터 x 세로 12미터인데, 평수(3.3m²)로 환산하면 약 21평 정도의 크기임(자료: 소방청).

4)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설치 방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5]에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요망

<노유자시설 화재 발생 현황(최근 5년간)>

연 도	계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요인	가스 노출	부주의		방화	방화 의심	
계	528	285	46	2	2	152	4	6	4	27
2019년	107	50	12	1	0	31	1	0	3	9
2020년	97	50	9	0	0	34	2	0	0	2
2021년	102	60	14	1	0	21	0	0	1	5
2022년	105	60	6	0	1	29	0	4	0	5
2023년	117	65	5	0	1	37	1	2	0	6

※ 자료: 소방청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동주택과 같이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 대해서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권고”는 어떠한 의무 부여나 미이행에 대한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일반적 행정행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보임.

소방청은,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인 요양원 등의 노유자시설에 화재나 그 밖의 재난 상황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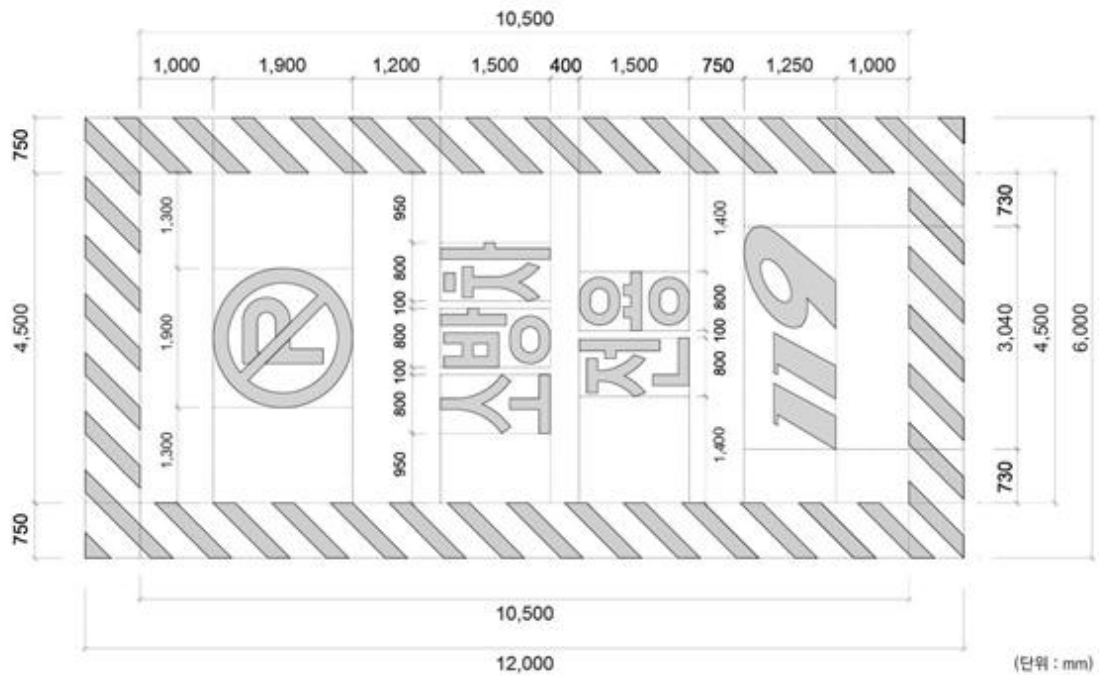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방법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5] <신설 2018. 8. 7.>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제7조의13제2항 관련)



비고

1.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센티미터로 하여 50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한다.
2.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 자료 : 소방청